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기 위해 조사의 내용, 방법,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2. 그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법규의 준수 여부 2.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